



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4. .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원주영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 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에 따라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내용을 개편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및 위촉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안 제6조제1항~제6항)
- 나.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제4항~제6항)
- 다. 재해보상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삭제(별지 제7호서식)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시민안전관
- 라. 입법예고 : 2024. 4. 5. ~ 4. 10. (6일간) /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및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표준안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 기준 마련 등 협의회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소집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1본부 14개의 지역대에서 233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사기를 진작시켜 방재 기능의 활성화로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1]

#### □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 단체명 :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 발대식 : 2009. 2. 14. (결성 : 2008. 10. 23.)
- 구 성 : 1본부 14지역대
  - 단 장(권영수) / 부단장(김보경, 김록빈) / 간사(유광숙)

(단위 : 명)

구분	계	본부	지역대													
			와부	진접	화도수동	진건	오남	퇴계원	별내면	조안	호평	평내	금곡, 양평	다산1	다산2	별내동
인원	233	10	16	15	14	25	17	11	12	10	21	12	10	20	20	20
대표	-	권영수	김광수	정회순	김경숙	조인상	김봉순	이인섭	유도근	박호선	임경수	송영자	김성규	오광부	김보경	김록빈

[참고자료 2]

□ 경기도 31개 시·군 조례 개정 현황(지역자율방재단)

순번	시군	소집수당	양성평등	비고
1	남양주시	×	×	
2	수원시	○	○	
3	성남시	○	×	
4	의정부시	○	×	
5	안양시	○	×	
6	부천시	○	○	
7	광명시	○	○	
8	평택시	○	×	
9	동두천시	○	×	
10	안산시	○	×	
11	고양시	×	○	
12	과천시	○	×	
13	구리시	○	○	
14	오산시	○	○	
15	군포시	×	○	
16	의왕시	○	×	
17	하남시	○	×	
18	용인시	○	○	
19	파주시	○	○	
20	시흥시	○	×	
21	이천시	×	×	
22	안성시	○	○	
23	여주시	○	○	
24	김포시	×	×	
25	화성시	○	×	
26	광주시	○	×	
27	양주시	×	×	
28	포천시	○	×	
29	연천군	○	×	
30	가평군	○	×	
31	양평군	○	×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제6항 신설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시장 또는 단장이 단원을 소집할 경우 단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 비용 발생이 예상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재난 발생을 예측할 수 없기에 추계 불가능하며, '23년~'24년 호우·대설주의보 발령 횟수를 기준으로 비용 산정을 하더라도 1억 미만일 것으로 여겨짐

☞ 소요예산 : 9,860원/시간 × 8시간/회 × 13회 × 30명 = 30,763,200원

- 시간당 단가 : 9,860원(2024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 1회 소집당 수당 지급 시간 : 8시간(소집수당 지급 가능 최대 시간)
- 소집 횟수 : 13회('23~'24년 호우주의보 8회, 대설주의보 5회)
- 소집 인원 : 약 30명(1회 소집 시)

### 4. 작성자

- 시민안전관 이명구